

의안번호	2211325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5.8.14.
추계번호	25D3614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 및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8억 5,000만원, 2032년 160억 9,0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42억 9,100만원(연평균 88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국선후견인 보수	1,610	4,888	8,293	11,830	15,485	42,106	8,421
국선후견감독인 보수	39	117	198	284	373	1,101	202
후견사건 심판절차비용	201	208	217	225	232	1,084	217
합계	1,850	5,213	8,708	12,339	16,090	44,291	8,8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가사조사관)	가정법원에 가사조사관을 두되, 임면, 정원, 업무범위, 사실조사의 방법, 절차 및 검사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의무규정
2	안 제12조(당사자 등을 위한 지원)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음 -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단체 등과의 연계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	재량규정
3	안 제16조(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3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가정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의 순위 또는 상속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이혼의 무효사건 - 이혼의 취소사건 - 친생부인 사건 - 인지청구 사건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 파양의 무효 사건 -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의무규정
5	안 제84조(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에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제11조(가사조사관)	—	미대상: 현행 「가사소송법」 이 가사조사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현재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을 채용하여 운영 중임
2	안 제12조(당사자 등을 위한 지원)	×	사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3	안 제16조(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 절차, 수당 지급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3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	개정안에 따른 통지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5	안 제84조(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보수와 심판절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의 보수와 후견사건 심판절차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각 사건마다 후견심판절차가 진행된 이후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이 신규 선임되어 지속적으로 후견 및 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
 - 국선후견인 선임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 국선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 국선후견인·국선후견감독인 보수 및 후견사건 심판절차비용의 단가는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추정함
 -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해 후견활동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 심판절차비용으로 1건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금액은 정해지지 않음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선후견인·국선후견감독인 보수

□ 국선후견인의 선임건수는 성년후견 및 미성년후견 사건 인용건수에 추정빈곤율¹⁾을 곱하여 산출

- 개정안은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의 선임사유로 사건 본인의 빈곤으로 인해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성년후견 및 미성년후견 선임건수는 2019~2023년 연간 선임건수 및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표 2] 성년후견 및 미성년후견 선임건수 및 증가율: 2019~2023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건수	6,029	6,790	7,059	7,340	7,581	—
선임건수 증가율	—	12.62%	3.96%	3.98%	3.28%	5.89%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19~2023년 연간 증가율의 기하평균으로 추정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빈곤율은 2019~2023년 5년간 빈곤율 평균 감소율 2.2%를 적용

[표 3] 빈곤율 추이: 2019~20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감소율
빈곤율	16.3%	15.3%	15.1%	14.9%	14.9%	—
빈곤율 감소율	—	6.14	1.31%	1.32%	0%	2.2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연간 국선후견인 신규 및 누적 선임건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1) 2019~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하여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빈곤율로 산정하고 추계함

[표 4] 국선후견인 선임건수 추정: 2028~2032년

(단위: 건)

구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건수	10,093	10,687	11,316	11,983	12,689
빈곤율	13.3%	13.0%	12.8%	12.5%	12.2%
국선후견인 신규 선임건수(A)	1,342	1,389	1,449	1,498	1,548
국선후견인 기존 선임건수(B)	-	1,342	2,731	4,180	5,678
국선후견인 선임건수 누계(C=A+B)	1,342	2,731	4,180	5,678	7,226

주: 국선후견인 기존 선임건수는 해당연도 이전의 신규 선임건수를 합한 건수임

(예: 2032년 기존 선임건수는 2028~2032년 신규 선임건수의 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선후견감독인의 선임건수는 국선후견인의 선임건수에 후견사건 중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국선후견감독인 선임건수는 관련 논문²⁾을 참고하여 국선후견인의 3.2%로 가정

[표 5] 국선후견감독인 신규 선임건수 추정: 2028~2032년

(단위: 건)

구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국선후견인 신규 선임건수(A)	1,342	1,389	1,449	1,498	1,548
국선후견감독인 선임 비율(B)	3.2%	3.2%	3.2%	3.2%	3.2%
국선후견감독인 신규 선임건수 (C=A×B)	43	44	46	48	50
국선후견감독인 기존 선임건수(D)	-	43	87	134	182
국선후견감독인 선임건수 누계(E=C+D)	43	87	134	182	2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비율은 전체사건의 12.4% 정도였지만, 특정후견심판의 경우에는 87.8%에 이르는 데, 이는 공공후견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한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정후견심판을 제외한다면 **후견감독인 선임 비율은 3.2%**에 불과하다.(자료: '후견감독',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 2019)

□ 개정안에 따른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는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 활동비용 단가를 참고하여 각 월 20만원으로 가정
- 신규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의 경우 첫해에는 6개월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합계
국선후견인	신규(명)	1,342	1,389	1,449	1,498	1,548	—
	기존(명)	—	1,342	2,731	4,180	5,678	—
	보수(A)	1,610	4,888	8,293	11,830	15,485	42,106
국선후견감독인	신규(명)	43	44	46	48	50	—
	기존(명)	—	43	87	134	182	—
	보수(B)	39	117	198	284	373	1,101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보수(C=A+B)		1,649	5,005	8,491	12,114	15,857	43,116

주: 국선후견인·국선후견감독인 보수 = 신규 국선후견인·국선후견감독인의 수 × 20만원 × 6개월
+ 기존 국선후견인·국선후견감독인의 수 × 20만원 × 12개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후견사건 심판절차비용

□ 후견사건 심판절차비용은 신규 국선후견인의 수에 1건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후견사건 1건당 신규 국선후견인 1명이 신규 선임되는 것으로 가정
- 지원단가는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사업 심판청구비용 단가를 참고하여 1건당 15만원으로 가정

[표 7] 심판절차비용: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합계
후견사건 건수	1,342	1,389	1,449	1,498	1,548	—
사건 1건당 지원단가	0.15	0.15	0.15	0.15	0.15	—
심판절차비용	201	208	217	225	232	1,0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 및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42억 9,100만원(연평균 88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합계	연평균
국선후견인 보수(A)	1,610	4,888	8,293	11,830	15,485	42,106	8,421
국선후견감독인 보수(B)	39	117	198	284	373	1,101	202
후견사건 심판절차비용(C)	201	208	217	225	232	1,084	217
합계(D=A+B+C)	1,850	5,213	8,708	12,339	16,090	44,291	8,8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기간 동안 빈곤율이 감소하고, 성년 및 미성년후견 선임 건수가 증가하며, 빈곤층에 해당하는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국선후견인이 선임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가사사건에서 국선후견인 선임 비율이 변화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